



우리나라환경영향평가 제도의개관

장 준기 /국립환경연구원 영향평가연구담당관

I. 서 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발의 가속화 및 인구의 증가는 자연의 순환과정에서 영구히 환원할수 없는 물질을 대량배출하여 유한한 생태계가 결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자연 그 자체를 극도로 파괴하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특히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갈구하던차,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 1970년1월1일 공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 하였다.

인류는 자연생태계의 일요소이며 자연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자연에 대한 의지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의 특성을 기초로 한 영향과 의지에 의한 자원의 이용과 산업구조등과의 조화내지 조합

을 통한 역사적인 소산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환경청의 신설을 계기로 사후처리적인 환경영향에서 사전방지적인 환경영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오염의 사전방지와 환경의 적정관리에 필요 불가결한 핵심적 제도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77년 12월 제98회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2305호의 공해방지법이 폐지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5조에서 “사전협의”라는 제목하에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실제로 동 제도는 국가의 형편상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9년 12월28일 제103회 정기국회에서 환경보전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비로소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라는 제도 아래 도시의 개발, 공업항 또는 도로의 건설, 수질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80년 1월 환경청이 발족함에 따라 본제도의 실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1980년 7월에는 본 제도를 1981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1981년 2월28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 하는 한편 동년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 갔다.

그후, 1981년 12월31일 환경보전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1984년 3월31일 평가서작성 제정과 업무처리지침도 각각 개정되어 본 제도가 시행되어 오던중 1986년 12월31일 환경보전법의 개정과 1987년 7월27일 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 제도가 민간사업에 까지 확대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환경보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이 11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환경보전법 제5조

- (1) 도시의 개발
- (1)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항만건설
- (5) 도로건설
- (6) 수자원개발

· 시행령 제4조

- (1) 철도(지하철 포함)의 건설
- (2) 공항(군용 제외)의 건설
- (3) 간척 및 항만준설
- (4) 아파트 지구의 개발
- (5) 관광단지의 개발

그러나, 이들 사업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일정한 규모의

사업만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된다.

III. 환경영향평가서작성 주체 및 그 작성의 대행

평가서는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개발코자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보전법 제5조의 9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가 평가서작성을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평가서에 이를 밝혀야 하며 그 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해 사업자가 진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

환경보전법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평가서작성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기관 및 자중에서 지정한다.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대학부설환경관계 연구소
-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자
- 기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법인
-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IV.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미리 환경처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시 환경처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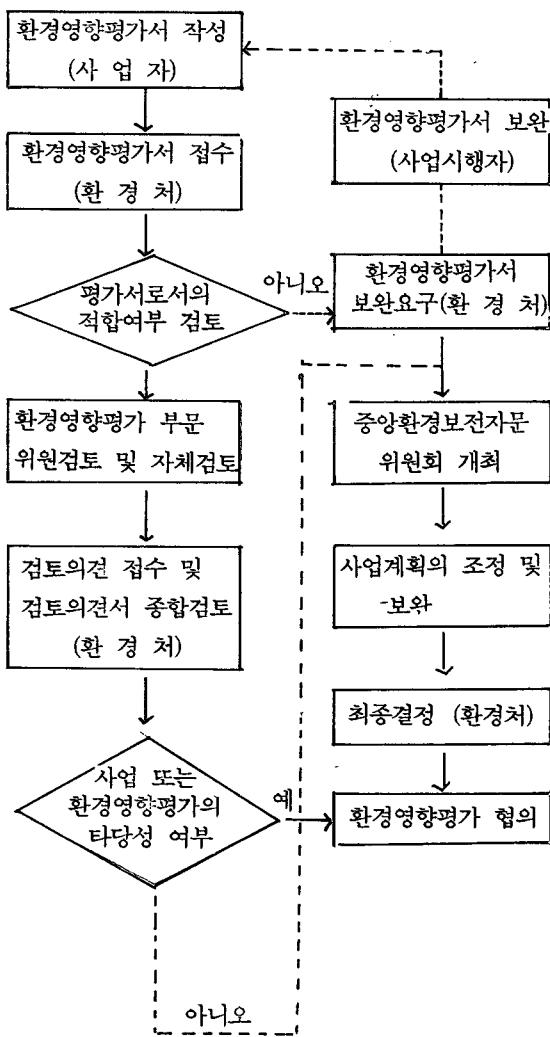
이는 현재도가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사업지역 주민과 일반인의 의견청취가 없는 점도 감안 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간은 50일 이내이며, 검토사항 중 기본적인 것으로는 평가서 내용의 총

실성과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의 정도로 크게 나눌수 있다.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둔다.

- (1)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목설정의 적정성
 - (2) 환경현황조사의 충실성
 - (3) 중요한 환경상 영향의 예측 및 평가 여부
 - (4) 가능한 합리적 대안의 고찰여부
 - (5) 사업실시로 인한 악영향의 정도
(지역의 범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자연 및 생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환경연학평가 검토 및 협의절차



V.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1 미 국

가장 발달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1970년에 NEPA와 유이한 주환경정책법을 제정한 이후 매년 3,500~4,000여건의 평가서가 작성되었으나 최근에 절차를 개선한 이후로는 매년 30건 정도로 감소되었다.

2 캐나다

1973년 12월20일 회의결정으로 “연방환경평가 및 심사정책”을 채택하였고 특히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는 1975년 환경평가법을 제정하여 주환경장관이 제안된 사업에 대해 승인, 거부, 변경을 시킬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3 영국

1971년 제정된 도시농촌 계획법에 의거해 모든 개발 활동이 지방정부기관계획에 의해 허가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절차의 일환으로 평가서가 작성되지는 않지만 제안된 계획안에 관련된 환경측면을 공청회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

4. 아일랜드

1976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에서 5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규칙절차의 일환으로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5. 스웨덴

196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환경보호허가청에 의한 허가, 면제, 지방행정당국에 대한 사전통고의 세가지 방법으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6. 일 본

수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안의 국회제출을 시도한 바 있으며 산업계의 저항으로 보류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6년 10월 천기시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조례, 요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6. 기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각각 1974년과 1975년에 법을 제정하고 동제도를 도입 시해하고 있다.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국가 구분	한 국	미 국	스 웨 덴	일 본
중심법률	환경보전법 (1977)	NEPA (1969)	환경보전법 (1970)	없 음
관련법률	없음	시행절차법 정보공개법	자연보전법	없 음 (행정지도)
대상사업	도시의 개발 등 11개 사업	연방 Project 연방 보조의 주 Project 인허가사업 연구개발사업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법률로 지정된 38종의 조업	도로(철도) 항만 공유수면매입 전원개발
작성자	사업시행자	연방 혹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주민공개방법	없 음	평가서배포등	공 램	공 램
공청회	없 음	각부가 결정	전 사 업	전 사 업
심사자	환경처와 협의	주무관청	환경청 환경보호 허가 위원회	환경 청장과 협의
최 종 결정자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환경보호 허가 위원회	주무관청

VII. 결 론

우리나라에서 10여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키위하여 환경처에서는 지난 150회 임시국회(1990. 7. 14)에서 통과된 환관련 6개법의 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진

일보하였다 하겠다.

크게 달라질 내용을 보 며는 다음과 같다.

-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방안설정
- 평가대상사업의 확대
- 평가서작성의 총실화(초안평가서와 평가서로 분리작성)